

〈별첨〉

연구개발과제협약 시 기술기여도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기여도를 연구개발과제협약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약 단계에서 논의를 위한 ‘매출액 기준’ 및 ‘기술기여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납부 대상

- 국가연구개발비의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고 있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 후 수익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 납부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인 ‘기술기여도’와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
- * ‘기술기여도(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는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이 활용된 제품의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R&D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정

정부납부기술료 =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② 기술 기여도(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 ③ 요율

(시행령)

● 매출액 기준에 따른 기술기여도 산정 방법(예시)

- 영리법인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로 기업 전체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침



1.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제품A2의 매출액이 발생(신규 제품)하였거나 증가(기존 제품 개선 등)한 경우

i)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전문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 단위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제품A2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 기술 기여도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ii)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제품군A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전문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군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제품군A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제품군에서의 제품A2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 기술 기여도 =	제품A2(예상 매출액*)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품군A(예상 매출액)	(총사업비***)
* 예상매출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iii) 제품A2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나 기업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전문기관은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기업매출액 확인하고,
 -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기업매출액에서 제품A2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A2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 기술 기여도 =	제품A2(예상 매출액*)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업(예상 매출액)	(총사업비***)
* 예상매출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2.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제품군C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매출액에 기여(공정 개선 활동 등)한 경우

i) 제품군 C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전문기관은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제품군별 점유비율'이 산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제품군C에 대한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제품군C 매출액에서의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군C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 기술 기여도 =	해당기술(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품군C(예상 매출액)		(총사업비***)

* 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ii) 제품군C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기업의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매출액 기준) 전문기관은 세무조정계산서 등에서 기업매출액 확인하고,
 - 기술료 산정시 매출액은 기업 전체 매출액 적용
- (기술기여도) (기업 매출액에서의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매출액 기여율)과 (제품군C에 대한 총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술기여도 협약 실시

• 기술 기여도 =	해당기술(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업(예상 매출액)		(총사업비***)

* 예상 매출기여액 : 정부R&D사업(총사업비)의 성과실시로 인한 예상 매출액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분
 *** 총사업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과제의 Σ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민간현금 + 민간현물)

● 기술기여도 작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협약 시 기술기여도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따른 확인 가능한 수익(매출액)**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술기여도를 기입

<p>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기술료의 징수·감면·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p>					
(단위: %)					

- (예시) 기술기여도는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

- ① (매출액 기여율) 기술료 산정 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인한 성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제시된 매출액 기준과 매출액 기여율* 적용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시 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은 연구개발과제협약 사항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여율은 각 년도 또는 평균 등 협의에 의해 정함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여율 산정기준	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평균
기업 (또는 제품군)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 제품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매출액 기여율(협약) (C=(B/A)×100)							

- ②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총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제시하되, 과제 종료 후 정산·환수 등을 반영하고 연구개발투자계획에 따른 실적 등 확인하여 재산정 및 적용 가능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산정기준	협약시	과제 종료 후
총사업비(A)		실사용 적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B)		실사용 적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술기여도 (D=(B/A)×100)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술기여도	확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여도 (재산정하여 반영)

- ③ (기술기여도 협약)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수익 기준), (매출액 기여율)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를 협약서에 명시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납부액 산정 시 반영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는 납부액 산정 시 과제 종료 후 정산·환수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

● 매출액 검증절차

- 전문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출액과 기여도를 검증함

1. (매출액 확인) 전문기관은 협약 시 제시된 제품 단위 또는 제품군 단위 등 매출액 기준이 재무제표, 매출전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되는지 확인
2. (기여도 확인) 전문기관은 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물의 매출기여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기여도 검증
3. (현장 검증) 전문기관은 자체 또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영리법인이 제출한 기술료 납부에 관련된 증빙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영리기관을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4. (검증단 구성) 전문기관이 현장 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회계전문기관 및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함

● 기타

- 상기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